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11월 24일, 정부 제출

나. 회부일자 : 2025년 11월 2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 2. 2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026. 2. 25.) 상정, 축조심사, 의결
(수정가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 2. 26.)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및 주요내용

(정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국가유산 관련 개별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및 무형유산위원회를 각각 폐지하는 대신 국가유산청 소속으로 국가유산위원회를 설치하여 통합 운영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시·도별 관할구역 내 국가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설치한 시·도문화유산위원회, 시·도자연유산위원회 및 시·도무형유산위원회를 각각 폐지하는 대신 시·도유산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고, 그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가. 국가유산위원회의 설치(안 제9조)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소속으로 국가유산위원회를 두고, 그 조사·심의 사항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등록 말소,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 및 지정 해제, 세계유산의 등재 신청, 역사문화환경 보호 및 현상변경 행위에 관한 사항 등 국가유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의 조사·심의 사항 및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정함.

나. 국가유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9조의2 신설)

- 1) 국가유산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1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 2) 국가유산의 유형별·종류별로 나누어 조사·심의함으로써 조사·심의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합동분과위원회를 열 수 있으며, 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근 전문위원을 국가유산위원회에 둘 수 있도록 함.
- 3) 국가유산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회의일시·장소, 출석위원,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고,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해야 하며, 특정인의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다. 시·도유산위원회의 설치(안 제9조의3 신설)

- 1)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유산위원회를 둔.
- 2) 시·도유산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촉에 관한 사항 등 시·도유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가. 국가유산위원회의 설치(안 제9조)

개정안은 문화유산위원회, 무형유산위원회 및 자연유산위원회를 각각 폐지하고 “국가유산위원회”로 통합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9조).

현행	개정안
제9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의 유형에 따른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형별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9조(국가유산위원회의 설치)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소속으로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8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유형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근현대문화유산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근현대문화유산법 제6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등록 및 등록의 말소 나. 근현대문화유산법 제8조에 따른 필수보존요소의 지정, 지정의 변경 및 해제 다. 근현대문화유산법 제27조에 따

현행	개정안
	<u>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 및 반출 기간의 연장 허가</u> <u>라. 근현대문화유산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과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그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u> <u>마. 근현대문화유산법 제44조 및 제47조에 따른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및 선정 취소</u> <u>3.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매장유산의 발굴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지시에 관한 사항</u> <u>4.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무형유산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u> <u>가. 무형유산법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및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과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그 지정의 해제</u> <u>나. 무형유산법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및 전승교육사의 인정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그 인정의 해제</u>

현행	개정안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문화유산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문화유산법 제23조,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보물, 국보, 사적 및 국가민속문화유산(이하 “국가지정문화유산”이라 한다)의 지정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그 지정의 해제 나. 문화유산법 제27조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및 조정과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나 그 범위의 조정 다. 문화유산법 제39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사적은 제외한다)의 국외 반출 허가 및 반출 기간의 연장 허가 6.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세계유산의 등재 신청,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세계유산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및 같은 법 제11조의4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검토에 관한 사항 7.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자연유산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현행	개정안
	가. 자연유산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을 말 한다. 이하 같다) 및 명승(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명승을 말 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그 지정의 해 제 나. 자연유산법 제13조제1항 및 제2 항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지정 및 조정과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 호구역의 지정 해제나 조정 다. 자연유산법 제20조에 따른 천연 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 반출 기간의 연장 허가 및 수출의 허 가 8.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국가유산청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유산,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나. 국가등록문화유산, 국가지정문 화유산,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현상변경 행위에 관한 사항 다. 국가등록문화유산, 국가지정문 화유산,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보존·관리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국가유

현행	개정안
	<u>산위원회의 조사·심의 사항 및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u>

현행법 제9조1)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의 유형에 따른 위원회를 개별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함),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함),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무형유산법”이라 함)에 따라2) 국가유산청에 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무형유산위원

1)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의 유형에 따른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형별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①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문화유산위원회를 둔다.

제71조(시·도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①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문화유산위원회(이하 “시·도 문화유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자연유산위원회의 설치) 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자연유산위원회(이하 “자연유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1조의2(시·도자연유산위원회의 설치) ①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자연유산의 보존·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자연유산위원회(이하 “시·도자연유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무형유산위원회의 설치) 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회를 두고 있음. 지방자치단체도 이와 마찬가지로, 시·도별 시·도문화유산위원회, 시·도자연유산위원회, 시·도무형유산위원회를 두고 있음.

각 위원회는 각 국가유산의 특성에 맞춰 국가유산의 지정·해제, 보존·관리·활용, 보호구역 설정, 현상변경·국외반출 허가, 수리·복구 명령, 유네스코 등재 등 전반적인 국가유산 정책 사항을 조사·심의하고 있음.

위원회의 위원은 각 국가유산 관련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인류학·사회학 등의 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함.

또한, 각 위원회는 효율적인 조사·심의를 위하여 각 국가유산의 종류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문화유산위원회는 8개³⁾, 자연유산분과위원회는 3개⁴⁾, 무형유산위원회는 3개⁵⁾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음(총 14개).

개정안은 개별 법률에 산재해 있는 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무형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1조(시·도무형유산위원회의 설치) ①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무형유산위원회(이하 “**시·도무형유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건축문화유산분과위원회, 동산문화유산분과위원회, 사적분과위원회, 매장유산분과위원회, 근현대 문화유산분과위원회, 민속문화유산분과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 궁능문화유산분과위원회

4) 동식물유산분과위원회, 지질·지형유산분과위원회, 명승·전통조경분과위원회

5) 전통예능분과위원회, 전통기술분과위원회, 전통지식분과위원회

및 무형유산위원회를 폐지하고, 국가유산위원회로 통합 운영하려는 것으로, 복합유산(문화유산+자연유산 등)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개정안은 대체로 현행 「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무형유산법」,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계유산법”이라 함),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유산위원회 등의 조사·심의 사항을 개정안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의 조사·심의 사항으로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음.

한편, 「무형유산법」 제10조제1항⁶⁾은 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유네스코 ‘무형유산’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⁷⁾은 「세계유산법」 제9조⁸⁾에 따른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6)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위원회는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국가무형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4.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5.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 무형유산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진흥 등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 ⑤ (생략)

7)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제2214506호)

제9조(국가유산위원회의 설치)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소속으로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6.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세계유산의 등재 신청,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세계유산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및 같은 법 제11조의4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검토에 관한 사항

8)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의 세계유산으로의 등재 신청만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유산위원회의 조사·심의사항에 ‘무형유산’의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의 등재를 추가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자연유산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자연유산법」 개정(2024. 2. 6.) 당시 행정안전부는 자연유산위원회가 문화유산위원회 및 무형유산위원회와 대상을 달리할 뿐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여 통합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자연유산 심의 기구 부재에 따른 입법 공백을 고려하여 2년의 존속기한을 두고 운영하되, 이후 3개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시하였고,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였음.⁹⁾

제9조(세계유산의 등재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국내의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유네스코에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할 수 있다.

9)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2024. 1. 8.)

나. 국가유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9조의2 신설)

개정안은 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및 무형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통합하면서 국가유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임(안 제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9조의2(국가유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국가유산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1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국가유산위원회의 위원은 국가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제9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가유산의 유형별·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위원회에 분과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는 조사·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제9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사·심의한 사항은 국가유산위원회에

현행	개정안
	<u>서 조사·심의한 것으로 본다.</u> <u>⑦ 국가유산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u> <u>1. 회의일시 및 장소</u> <u>2. 출석위원</u> <u>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u> <u>⑧ 제7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u> <u>⑨ 국가유산위원회에는 국가유산청장이나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u> <u>⑩ 국가유산위원회 위원의 자격,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조직·분장사항 및 운영, 제9항에 따른 비상근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개정안 제9조의2는 국가유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유산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1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제1항).

또한, 국가유산위원회의 위원은 국가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제2항 및 제3항).

국가유산위원회의 조사·심의 사항에 관하여 국가유산의 유형별·종류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필요시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가 함께 조사·심의할 수 있는 합동분과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하고 있음(제4항 및 제5항).

한편, 국가유산위원회, 분과위원회, 합동분과위원회로 하여금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며,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인의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제7항 및 제8항).

마지막으로, 국가유산위원회에는 국가유산청장이나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국가유산위원회의 자격, 분과위원회의 조직·분장사항 및 운영, 비상근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제9항 및 제10항).

개정안은 전반적으로 현행 「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및 「무형유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통합·조정하고 있는데, 현행 문화유산법 시행령 등에서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의 수, 임기, 위원장 선출 방법 및 보궐위원의 임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반면, 현행 「자연유산법」과 「무형유산법」은 각각 해당 법률에서 위원회의 위원 수를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며,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즉 개정안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의 최대인원은 현행 3개 위원회의 위원 총수(總數)인 160명에 비해 20명 감소한 140명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음.

[현행과 개정안의 비교]

구분	現 문화유산법	現 자연유산법	現 무형유산법	개정안
위원의 수	100명 이내 (시행령)	30명 이내 (법률)	30명 이내 (법률)	140명 이내 (법률)
위원의 임기	2년 (시행령)	2년 (법률)	2년 (법률)	2년 (법률)
위원장 선출방식	호선 (시행령)	호선 (법률)	호선 (법률)	호선 (법률)
보궐위원의 임기	전임자 잔여기간 (시행령)	전임자 잔여기간 (법률)	전임자 잔여기간 (법률)	전임자 잔여기간 (법률)

참고로 2026년 2월 9일 기준 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및 무형유산위원회의 위원 정원은 160명이고, 현원은 134명(겸직 포함 시 145명)임¹⁰⁾.

10) 참고 “위원회 운영 현황” 참조

다. 시·도유산위원회의 설치(안 제9조의3 신설)

개정안은 시·도문화유산위원회, 시·도무형유산위원회 및 시·도자연유산위원회를 각각 폐지하고 시·도유산위원회로 통합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9조의3(시·도유산위원회의 설치)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유산위원회(이하 “시·도유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유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조사·심의에 관한 사항 2. 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촉에 관한 사항 3. 분과위원회 등 시·도유산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4. 전문위원의 임기, 위촉·해촉과 활용에 관한 사항 ③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유산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요청하려면 시

현행	개정안
	· 도유산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가지정문화유산, 천연기념물 및 명승과 그 보호구역 및 보호물의 지정 또는 해제 2.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또는 등록 말소 3.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현행 「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및 「무형유산법」은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및 무형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무형유산은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문화유산위원회, 시·도자연유산위원회, 시·도무형유산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각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해당 조례는 각 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무형유산은 보존 및 진흥)과 관련된 조사·심의에 관한 사항, 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위원의 위촉과 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또한, 시·도지사가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유산의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 포함) 지정 또는 해제,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또는 말소,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보호물과 보호구역 포함)의 지정 또는 해제,

시·도무형유산의 국가무형유산으로의 지정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요청 또는 신청하려면 국가유산의 종류에 따라 시·도문화유산위원회, 시·도자연유산위원회 또는 시·도무형유산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함.

해당 규정에 따라 국가유산의 유형별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반면(경북, 광주), 부분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음(서울, 부산).

[지자체별 시·도유산위원회 운영 현황]

시·도명	근거조례	위원회 명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국가유산위원회
	서울특별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무형유산위원회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국가유산위원회
	부산광역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무형유산위원회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문화유산위원회
	광주광역시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광주광역시 자연유산위원회
	광주광역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무형유산위원회
경상북도	경상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문화유산위원회
	경상북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자연유산위원회
	경상북도 무형유산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무형유산위원회

자료: 국가유산청

개정안은 현행 3개의 위원회를 시·도유산위원회로 통합 운영하려는 것으로, 「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및 「무형유산법」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것 외에는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임.

라.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안 제34조의2 신설)

개정안은 국가유산위원회의 위원과 시·도유산위원회의 위원의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34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국가유산위원회 위원(시·도유산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안은 국가유산위원회의 위원 및 시·도유산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¹¹⁾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

11)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 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로 간주하여 적용하려는 것으로, 현행 「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및 「무형유산법」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마. 부칙

개정안 부칙은 시행일, 국가유산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문화유산위원회 등의 폐지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개 정 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유산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설치된 무형유산위원회(같은 법 제10조제2항·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치된 문화유산위원회(같은 조 제3항·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설치된 자연유산위원회(같은 법 제7조의3제2항·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가 조사·심의한 사항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가유산위원회(제9조의2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가 조사·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시·도유산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설치된 시·도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라 설치된 시·도자연유산위원회 및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설치된 시·도무형유산위원회가 조사·심의한 사항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도유산위원회가 조사·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유

개 정 안

산에 관한 사항의 경우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시·도문화유산위원회를 말한다)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시·도자연유산에 관한 사항의 경우 같은 법 제41조의2에 따른 시·도자연유산위원회를 말한다)”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시·도지정유산 또는 시·도등록유산 등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의3에 따른 시·도유산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문화유산위원회 및 자연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②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중 “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2년”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신청하면”을 “신청하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시·도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도유산위원회(이하 “시·도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시·도문화유산위원회”를 “시·도유산위원회”로 한다.

제44조제3항 본문 중 “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③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

개 정 안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발굴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제2항 단서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4항 및 제25조제1항제4호·제8호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④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중 “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경우”를 “경우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9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중 “시·도무형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 3에 따른 시·도유산위원회(이하 “시·도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시·도무형유산위원회”를 “시·도유산위원회”로 한다.

제35조 후단 중 ““위원회”는 “시·도무형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는 “시·도유산위원회””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55조제1호를 삭제한다.

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개 정 안

제23조제1항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지정할”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정할”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있으면”을 “있으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32조제1항 및 제34조의2제1항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35조제4항 본문 및 단서 중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39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청하면”을 “신청하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2조제2항 및 제70조제4항 전단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71조 및 제89조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⑥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치된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도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도유산위원회”로 한다.

⑦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유네스코”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유네스코”로 한다.

개 정 안

제10조제5항 전단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이하 “문화유산위원회”라 한다)”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11조의4제1항, 제13조제3항 전단 및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⑧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⑨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자연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자연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구역율”을 “구역율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를 “경우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있으면”을 “있으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중 “자연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0조제4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제2호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0조제3항 전단 중 “자연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41조의2, 제41조의3 및 제65조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⑩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개 정 안

부분 중 “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⑪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20845호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6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

제5조(「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종전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위원회의 위원(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시·도무형유산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의 공무원 의제에 관하여는 부칙 제4조제4항에 따라 개정되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종전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문화유산위원회 위원(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시·도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의 공무원 의제에 관하여는 부칙 제4조제5항에 따라 개정되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9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종전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 및 시·도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의 공무원 의제에 관하여는 부칙 제4조제9항에 따라 개정되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중 시행일을 살펴보면, 시행일을 2026년 5월 17일로 하고 있음. 2024년 5월 17일 ‘문화재’에서 ‘국가유산’ 체계로 개편됨과 동시에 「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및 「무형유산법」이 시행되었고, 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및 무형유산위원회의 각 위원의 임기인 2년이 2026년 5월 16일에 만료됨¹²⁾. 이에 개정안은 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고려하여 시행일을 2026년 5월 17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자연유산법」의 경우 자연유산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6년 5월 17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¹³⁾, 자연유산위원회의 존속기한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2026년 5월 17일로 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12) 보궐위원의 경우 전임자의 잔여 기간을 임기로 하고, 모든 위원회의 위원이 2024년 5월 17일부터 임기를 시작하였으므로, 임기 만료일은 2026년 5월 16일임.

1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자연유산위원회의 존속기한) 자연유산위원회는 2026년 5월 17일까지 존속한다.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임오경)

수정가결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일부 체계·자구 수정이 있었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

1.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2.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수정이유

무형유산의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의 등재 신청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추가하고, 개정안에서 인용하는 법률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약칭으로 사용된 법률명을 정식명칭으로 수정함(안 제9조).

수정주요내용

가. 무형유산의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의 등재 신청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추가하기 위하여 안 제9조제2호를 신설하고 안 제9조제7호(개정안 제9조제6호)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9조”를 삭제함(안 제9조제2호 신설 및 같은 조 제7호).

나. 개정안에서 인용하는 법률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약칭으로 사용된 법률명을 정식명칭으로 수정함(안 제9조제3호·제5호·제6호·제8호).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제2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의 세계유산 및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의 등재 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3호(개정안 제9조제2호) 각 목 이외에 부분 중 “(이하 이 호에서 “근현대문화유산법”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중 “근대문화유산법”을 각각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안 제9조제5호(개정안 제9조제4호) 각 목 이외에 부분 중 “(이하 이 호에서 “무형유산법”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무형유산법”을 각각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안 제9조제6호(개정안 제9조제5호) 각 목 이외에 부분 중 “(이하 이 호에서 “문화유산법”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문화유산법”을 각각 “「문화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안 제9조제7호(개정안 제9조제6호) 중 “제9조에 따른 세계유산의 등재 신청, 같은 법”을 삭제한다.

안 제9조제8호(개정안 제9조제7호) 각 목 이외에 부분 중 “(이하 이

호에서 “자연유산법”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
까지 중 “자연유산법”을 각각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
률」”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u>제9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의 유형에 따른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유형별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u>	<u>제9조(국가유산위원회의 설치)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소속으로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u>1. 제8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유형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2.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u>	<u>제9조(국가유산위원회의 설치) (개정안과 같음)</u> 1. (개정안과 같음) 2. <u>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의 세계유산 및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의 등재 신청에 관한 사항</u> 3. <u>「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u>

<u>에 관한 법률」</u> <u>(이하 이 호에서</u> <u>“근현대문화유산</u> <u>법”이라 한다)에</u> <u>따른 다음 각 목의</u> <u>사항</u>	<u>용에 관한 법률」</u> ----- ----- ----- ----- --
<u>가. 근현대문화</u> <u>유산법 제6조</u> <u>제1항 및 제25</u> <u>조제1항에 따</u> <u>른 국가등록문</u> <u>화 유 산 (같 은</u> <u>법 제2조제2호</u> <u>가목에 따른</u> <u>국가등록문화</u> <u>유산을 말한다.</u> <u>이하 같다)의</u> <u>등록 및 등록</u> <u>의 말소</u>	<u>가. 「근현대문</u> <u>화유산의 보</u> <u>존 및 활용에</u> <u>관한 법률」 -</u> ----- ----- ----- ----- ----- ----- ----- -----
<u>나. 근현대문화</u> <u>유산법 제8조</u> <u>에 따른 필수</u> <u>보존요소의 지</u> <u>정, 지정의 변</u> <u>경 및 해제</u>	<u>나. 「근현대문</u> <u>화유산의 보</u> <u>존 및 활용에</u> <u>관한 법률」 -</u> ----- -----
<u>다. 근현대문화</u>	<u>다. 「근현대문</u>

	<u>유산법 제27조</u> <u>에 따른 국가</u> <u>등록문화유산</u> <u>의 국외 반출</u> <u>허가 및 반출</u> <u>기간의 연장</u> <u>허가</u>	<u>화유산의 보</u> <u>존 및 활용에</u> <u>관한 법률」 -</u> ----- ----- ----- --
	<u>라. 근현대문화</u> <u>유산법 제33조</u> <u>제1항에 따른</u> <u>근현대문화유</u> <u>산지구의 지정</u> <u>과 같은 법 제3</u> <u>4조제1항에 따</u> <u>른 그 구역의</u> <u>변경 및 지정</u> <u>의 해제</u>	<u>라. 「근현대문</u> <u>화유산의 보</u> <u>존 및 활용에</u> <u>관한 법률」 -</u> ----- ----- ----- ----- ----- -----
	<u>마. 근현대문화</u> <u>유산법 제44조</u> <u>및 제47조에</u> <u>따른 예비문화</u> <u>유산의 선정</u> <u>및 선정 취소</u>	<u>마. 「근현대문</u> <u>화유산의 보</u> <u>존 및 활용에</u> <u>관한 법률」 -</u> ----- -----
	<u>3. 「매장유산 보호</u> <u>및 조사에 관한 법</u> <u>률」 제11조에 따</u>	<u>4. (개정안 제3호와</u> <u>같음)</u>

른 매장유산의 발
굴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
른 발굴된 매장유
산의 보존조치 지
시에 관한 사항

4. 「무형유산의 보
전 및 진흥에 관
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무형
유산법”이라 한
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무형유산법
제 12 조 제 1 항
및 제13조제1
항에 따른 국
가무형유산 및
국가긴급보호
무형유산의 지
정과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그 지정
의 해제

나. 무형유산법
제17조, 제18조

5.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가. 「무형유산
의 보전 및 진
흥에 관한 법
률」-----

나. 「무형유산
의 보전 및 진

및 제19조에
따른 국가무형
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
보유자 및 전
승교육사의 인
정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그 인정의 해
제

홍에 관한 법
를」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문화유산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가. 문화유산법
제23조,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보물, 국
보, 사적 및 국
가민속문화유
산(이하 “국가
지정문화유산”
이라 한다)의

가. 「문화유산
의 보존 및 활
용에 관한 법
률」-----

지정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그 지정
의 해제

나. 문화유산법

제27조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
정 및 조정과
같은 법 제31
조에 따른 보
호물 또는 보
호구역의 지정
해제나 그 범
위의 조정

다. 문화유산법

제39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
유산(사적은
제외한다)의
국외 반출 허
가 및 반출 기
간의 연장 허
가

6. 「세계유산의 보
존·관리 및 활용

나. 「문화유산

의 보존 및 활
용에 관한 법
률」-----

다. 「문화유산

의 보존 및 활
용에 관한 법
률」-----

7. -----

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세
계유산의 등재 신
청, 같은 법 제10
조에 따른 세계유
산지구의 지정 또
는 변경 및 같은
법 제11조의4에
따른 세계유산영
향평가서의 검토
에 관한 사항

7.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하 이 호에서 “자
연 유 산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
음 각 목의 사항

가. 자연유산법
제11조 및 제1
2조에 따른 천
연기념물(같은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천연
기념물을 말한
다. 이하 같다)

제10조

8.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가. 「자연유산
의 보존 및 활
용에 관한 법
률」

<u>및 명승(같은</u>	-----
<u>법 제2조제3호</u>	-----
<u>에 따른 명승</u>	-----
<u>을 말한다. 이</u>	-----
<u>하 같다)의 지</u>	-----
<u>정과 같은 법</u>	-----
<u>제15조에 따른</u>	-----
<u>그 지정의 해</u>	-----
<u>제</u>	--
<u>나. 자연유산법</u>	<u>나. 「자연유산</u>
<u>제 13 조 제 1 항</u>	<u>의 보존 및 활</u>
<u>및 제2항에 따</u>	<u>용에 관한 법</u>
<u>른 보호물 및</u>	<u>률」</u> -----
<u>보호구역의 지</u>	-----
<u>정 및 조정과</u>	-----
<u>같은 조 제3항</u>	-----
<u>및 제4항에 따</u>	-----
<u>른 보호물 또</u>	-----
<u>는 보호구역의</u>	-----
<u>지정 해제나</u>	-----
<u>조정</u>	---
<u>다. 자연유산법</u>	<u>다. 「자연유산</u>
<u>제20조에 따른</u>	<u>의 보존 및 활</u>
<u>천연기념물의</u>	<u>용에 관한 법</u>
<u>국외 반출 허</u>	<u>률」</u> -----
<u>가, 반출 기간</u>	-----

	<u>의 연장 허가</u>	-----
	<u>및 수출의 허</u>	-----
	<u>가</u>	--
	<u>8. 다음 각 목의 사</u>	<u>9. (개정안 제8호와</u>
	<u>항 중 국가유산청</u>	<u>같음)</u>
	<u>장이 중요하다고</u>	
	<u>인정하는 사항</u>	
	<u>가. 국가지정문화</u>	
	<u>유산, 천연기념</u>	
	<u>물 및 명승의</u>	
	<u>역사문화 환경</u>	
	<u>보호에 관한</u>	
	<u>사항</u>	
	<u>나. 국가등록문화</u>	
	<u>유산, 국가지정</u>	
	<u>문화유산, 천연</u>	
	<u>기념물 및 명</u>	
	<u>승의 현상변경</u>	
	<u>행위에 관한</u>	
	<u>사항</u>	
	<u>다. 국가등록문화</u>	
	<u>유산, 국가지정</u>	
	<u>문화유산, 천연</u>	
	<u>기념물 및 명</u>	
	<u>승의 보존·관</u>	
	<u>리에 관한 전</u>	

	<u>문적 또는 기</u> <u>술적 사항</u> <u>9. 그 밖에 다른 법</u> <u>령에 따른 국가유</u> <u>산위원회의 조사</u> <u>· 심의 사항 및 국</u> <u>가유산의 보존·</u> <u>관리 및 활용 등에</u> <u>관하여 국가유산</u> <u>청장이 심의에 부</u> <u>치는 사항</u>	<u>10.</u> (개정안 제9호 와 같음)
--	---	--------------------------------------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국가유산위원회의 설치)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소속으로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8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유형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의 세계유산 및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의 등재 신청에 관한 사항
3.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등록 및 등록의 말소

나.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필수보존요소의 지정, 지정의 변경 및 해제

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 및 반출 기간의 연장

허가

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과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그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마.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제47조에 따른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및 선정 취소

4.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매장유산의 발굴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지시에 관한 사항

5.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및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과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그 지정의 해제

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및 전승교육사의 인정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그 인정의 해제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보물, 국보, 사적 및 국가민속문화유산(이하 “국가지정문화유산”이라 한다)의 지정 및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그 지정의 해제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및 조정과 같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의 해제나 그 범위의 조정

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사적은 제외한다)의 국외 반출 허가 및 반출기간의 연장 허가

7.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세계유산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및 같은 법 제11조의4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검토에 관한 사항

8.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명승(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명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그 지정의 해제

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지정 및 조정과 같은 조 제3

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나 조정
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천
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 반출 기간의 연장 허가 및 수출
허가

9.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국가유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유산,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역사문화환경 보호
에 관한 사항

나. 국가지정문화유산, 국가등록문화유산,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현상변경 행위에 관한 사항

다. 국가지정문화유산, 국가등록문화유산,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보존·관리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

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의 조사·심의 사항
및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국가유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국가유산위원회는 위원
장 1명,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1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국가유산위원회의 위원은 국가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
한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제9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가유산의 유형별·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위원회에 분과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는 조사·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제9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사·심의한 사항은 국가유산위원회에서 조사·심의한 것으로 본다.

⑦ 국가유산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⑧ 제7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⑨ 국가유산위원회에는 국가유산청장이나 국가유산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⑩ 국가유산위원회 위원의 자격,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제9항에 따른 비상근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3(시·도유산위원회의 설치)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유산위원회(이하 “시·도유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유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조사·심의에 관한 사항
2. 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촉에 관한 사항
3. 분과위원회 등 시·도유산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4. 전문위원의 임기, 위촉·해촉과 활용에 관한 사항

③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유산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요청하려면 시·도유산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가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구역 및 보호물의 지정 또는 해제
2.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또는 등록 말소
3. 천연기념물·명승과 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

4.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제34조제2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조에 따라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국가유산위원회 위원(시·도유산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유산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설치된 무형유산위원회(같은 법 제10조제2항·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치된 문화유산위원회(같은 조 제3항·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설치된 자연유산위원회(같은 법 제7조의3제2항·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가 조사·심의한 사항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가유산위원회(제9조의2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가 조사·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시·도유산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설치된 시·도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라 설치된 시·도자연유산위원회 및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설치된 시·도무형유산위원회가 조사·심의한 사항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도유산위원회가 조사·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유산에 관한 사항의 경우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시·도문화유산위원회를 말한다)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시·도자연유산에 관한 사항의 경우 같은 법 제41조의2에 따른 시·도자연유산위원회를 말한다)”를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시·도지정유산 또는 시

· 도등록유산 등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의3에 따른 시·도유산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문화유산위원회 및 자연유산위원회”를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및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②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중 “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2년”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신청하면”을 “신청하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시·도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도유산위원회(이하 “시·도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시·도문화유산위원회”를 “시·도유산위원회”로 한다.

제44조제3항 본문 중 “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③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발굴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제2항 단서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4항 및 제25조제1항제4호·제8호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④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중 “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경우”를 “경우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9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중 “시·도무형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도유산위원회(이하 “시·도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시·도무형유산위원회”를 “시·도유산위원회”로 한다.

제35조 후단 중 ““위원회”는 “시·도무형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는 “시·도유산위원회””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55조제1호를 삭제한다.

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지정할”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정할”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있으면”을 “있으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32조제1항 및 제34조의2제1항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35조제4항 본문 및 단서 중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39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청하면”을 “신청하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출 허

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2조제2항 및 제70조제4항 전단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71조 및 제89조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⑥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치된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도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도유산위원회”로 한다.

⑦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유네스코”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유네스코”로 한다.

제10조제5항 전단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이하 “문화유산위원회”라 한다)”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11조의4제1항, 제13조제3항 전단 및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⑧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⑨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자연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자연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구역”을 “구역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를 “경우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있으면”을 “있으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중 “자연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0조제4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제2호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0조제3항 전단 중 “자연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41조의2, 제41조의3 및 제65조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⑩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⑪ 법률 제20845호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6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9조제1호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의 공무원 의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무형유산위원회의 위원(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시·도무형유산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문화유산위원회 위원(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시·도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같은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시·도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9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u>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의 유형에 따른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u>② 제1항에 따른 유형별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u>	<u>제9조(국가유산위원회의 설치) 국</u> <u>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u> <u>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u> <u>·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u> <u>소속으로 국가유산위원회(이하</u> <u>“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를 둔</u> <u>다.</u> 1. <u>제8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유</u> <u>형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u> <u>항</u> 2. <u>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u> <u>산의 세계유산 및 인류무형문</u> <u>화유산으로의 등재 신청에 관</u> <u>한 사항</u> 3. 「<u>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u> <u>활용에 관한 법률</u>」에 따른 다 음 각 목의 사항 가. 「<u>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u> <u>및 활용에 관한 법률</u>」 제6 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u>국가등록문화유산(같은</u> <u>법 제2조제2호가목에</u> <u>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을</u>

말한다. 이하 같다)의 등록
및 등록의 말소

나.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
조에 따른 필수보존요소의
지정, 지정의 변경 및 해제

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
7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
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 및
반출 기간의 연장 허가

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
3조제1항에 따른 근현대문
화유산지구의 지정과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그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
제

마.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
4조 및 제47조에 따른 예비
문화유산의 선정 및 선정
취소

4.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매
장유산의 발굴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지시에
관한 사항

5.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
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및 국
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
정과 같은 법 제16조제1항
에 따른 그 지정의 해제

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
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
유단체, 명예보유자 및 전
승교육사의 인정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그 인정
의 해제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보물, 국보, 사적 및 국가민
속문화유산(이하 “국가지
정문화유산”이라 한다)의
지정 및 같은 법 제31조제1
항에 따른 그 지정의 해제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
구역의 지정 및 조정과 같
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
정의 해제나 그 범위의 조
정

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은 제외한다)의 국외
반출 허가 및 반출 기간의
연장 허가

7.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에 따른 세계유산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및 같은 법 제11조
의4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
서의 검토에 관한 사항

8.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명승(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명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그 지정의 해제

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지정 및 조정과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나 조정

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 반출 기간의 연장 허가 및 수출 허가

<신 설>

9.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국가유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유산,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나. 국가지정문화유산, 국가등록문화유산,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현상변경 행위에 관한 사항

다. 국가지정문화유산, 국가등록문화유산,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보존·관리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

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의 조사·심의 사항 및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의2(국가유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국가유산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1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국가유산위원회의 위원은 국가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제9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가유산의 유형별·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위원회에 분과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는 조사·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제9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사·심의한 사항은 국가유산위원회에서 조사·심의한 것으로 본다.

⑦ 국가유산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

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
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
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⑧ 제7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
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인의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⑨ 국가유산위원회에는 국가유
산청장이나 국가유산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각 분과위원회 위
원장의 명을 받아 국가유산위원
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
· 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
행하는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⑩ 국가유산위원회 위원의 자
격,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
원회의 조직 및 운영, 제9항에
따른 비상근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신 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3(시·도유산위원회의 설치)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유산위원회(이하 “시·도유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유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조사·심의에 관한 사항
2. 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촉에 관한 사항
3. 분과위원회 등 시·도유산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4. 전문위원의 임기, 위촉·해촉

제34조(국가유산의 날) ① (생략) ② 국가유산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 또는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u>가 따로 정할 수 있다. <u><신 설></u>	<u>과 활용에 관한 사항</u> ③ <u>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유산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요청하려면 시·도유산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u> 1. <u>국가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구역 및 보호물의 지정 또는 해제</u> 2. <u>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또는 등록 말소</u> 3. <u>천연기념물·명승과 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u> 4. <u>국가무형유산의 지정</u> 제34조(국가유산의 날)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시·도지사</u>----- ----- -----. 제34조의2(별칙 적용에서 공무원의제) 제9조에 따라 국가유산의 <u>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국가유산</u>
---	--

	<u>위원회 위원(시·도유산위원회</u> <u>의 위원을 포함한다)은 「형</u> <u>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u> <u>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u> <u>본다.</u>
--	--